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한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573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4.

발 의 자:김한규·신정훈·김성환

김 윤・박홍배・채현일

윤건영 • 이재관 • 오기형

강준현 • 주철현 • 이병진

전진숙 · 문대림 · 장철민

박희승 • 김영환 • 박지원

서미화 · 서영교 · 이광희

문금주 · 오세희 · 권향엽

위성락 • 추미애 • 임미애

최민희 의원(2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교제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교제폭력의 예방과 교제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그 행위 대상자가 친밀관계의 여부에 차이가 있을 뿐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·방법 등에 있어서는 동일할 필 요가 있음.

이에 교제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도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「스토킹·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 률」로 개정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572호)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중 "스토킹방지"를 "스토킹 • 교제폭력 방지"로 한다.

제1조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 및 교제폭력"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"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(종전의 제3호)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 또는 교제폭력"으로 한다.

- 3. "교제폭력"이란 「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제폭력행위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교제폭력범죄를 말한다.
- 4. "교제폭력행위자"란 교제폭력을 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 및 교제폭력(이하 "스토킹등"이라 한다)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"을 "스토킹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등"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스토킹에"를 "스토킹등에"로, "스토킹"을 "스토킹등"으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"스토킹의"을 "스토킹등의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·제3항 및 제4항 중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등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스토킹"을 각각 "스토킹등"으로, "스토킹으로"를 "스토킹등으로"로 한다.

제9조제1호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"스토킹행위자"를 "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"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9호 중 "스토킹과 스토킹 피해"를 "스토킹등과 스토킹등 피해"로 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중 "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스토킹범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"스토킹행위자"를 "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"스토킹"을 "스토킹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스토킹행위자"를 "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행위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<u>스토킹방지</u> 및 피해자보호 등에 스토킹 •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 이 법은 스토킹을 예 제1조(목적) ----스토킹 및 교 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· 지원함 제폭력-----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"스토킹"이란 「스토킹범죄 1. ------「스토킹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 관한 법률 | -----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. 2. (생략) 2. (현행과 같음) 3. "교제폭력"이란 「스토킹범 <신 설> 죄 및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에 따른 교제폭력행위 및 같 은 조 제5호에 따른 교제폭력 범죄를 말한다. 4. "교제폭력행위자"란 교제폭 <신 설> 력을 한 사람을 말한다. 3. "피해자"란 스토킹으로 직접 | 5. -----스토킹 또는 교제 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

한다.

- 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기 지방자치단체는 <u>스토킹</u>의 예방 ·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·지원 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・ 운영
 - 2. <u>스토킹</u> 예방·방지를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
 - 3. ~ 6. (생략)
 - 7. <u>스토킹</u>의 예방·방지와 피해 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 - 8. 9. (생략)
 - ② (생 략)
- 제4조(<u>스토킹</u> 실태조사) ① 여성 지 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<u>스토킹</u> <u>에</u>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, 이를 <u>스토</u> <u>킹</u>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 - ② (생략)
- 제5조(<u>스토킹</u> 예방교육 등) ① 국 기관, 지방자치단체, 「초· 중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

.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
스토킹 및 교
제폭력(이하"스토킹등"이라 한
다)

1. <u>스토킹등</u>
2. 스토킹등
3. ~ 6. (현행과 같음)
7. 스토킹등
8. • 9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4조(<u>스토킹등</u> 실태조사) ①
스토킹등에
스토킹등
② (현행과 같음)
제5조(<u>스토킹등</u> 예방교육 등) ①

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단체의 장은 <u>스토킹의</u> 예방 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 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「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판른 기정폭력 예방교육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매매예방교육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,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위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 공단체의 장은 <u>스토킹</u>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, 사건

스토킹등의
②스토킹등
③
스 <u>스토킹등</u>

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· 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 여야 한다.

④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용자는 <u>스토킹</u>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장 내 <u>스토킹</u>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.

⑤ ・ ⑥ (생 략)

제6조(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등) ① 피해자 또 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피해자 또 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 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~ 8. (생략)
- ② (생략)
- 제9조(지원시설의 업무) 지원시설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.
 - 1. <u>스토킹</u> 신고 접수와 이에 관 한 상담

④
스토킹
등스토킹
<u> </u>

· 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제6조(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
조치의 금지 등) ①
스토킹등
스토킹등
스토킹등으로
,
1. ~ 8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 9 조 (지 원 시 설 의 업 무)
1. 스토킹등

- 2. ~ 5. (생 략)
- 6. <u>스토킹행위자</u>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 차에 관하여 「법률구조법」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 단 등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
- 7. (생략)
- 8. <u>스토킹</u>의 예방·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
- 9. <u>스토킹과 스토킹 피해</u>에 관 한 조사·연구
- 10. · 11. (생략)
- 제10조(종사자 등의 자격기준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지원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 - 1. ~ 3. (생 략)
 - 4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아나한 사람
 - ② (생 략)

제13조(경찰관서의 협조) ① 지원

2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스토킹행위자 또는 교제폭력
행위자
7. (현행과 같음)
8. 스토킹등
9. <u>스토킹등과 스토킹등 피해</u> -
10. · 11.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종사자 등의 자격기준) ①
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경찰관서의 협조) ①

시설의 장은 <u>스토킹행위자</u>로부 터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 (지구대·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)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 다.

② (생략)

제14조(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) ① 사법경찰관리는 <u>스토킹</u> 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 야 한다.

② · ③ (생 략)

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·신고자·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스토 킹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⑤ (생 략)

ムビョ